

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4] <개정 2023. 5. 15.>

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(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)

1.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 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
 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2.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 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
 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
 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
 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)
 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
 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
 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
 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
 -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
 - 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 - 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
 - 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·군사시설
 - 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